

수신: 국회의장

제목: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전송: 793-4745

성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 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의 명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소개년 월일	1997년 5월 29일
<p style="text-align: center;">소개의견</p> <p>1. 한보사태와 김현철 비자금 사건등 연이은 정치부패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에 대한 음성적인 자금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척결 없이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21세기 선진적인 정치개혁은 참으로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p> <p>2.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1994년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몇가지 법률적 맹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이나, 제11조에 선관위에 기탁해야 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정당'으로 한정하여 정치인 개별에는 사실상 무한정의 정치자금이 무차별하게 유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한 점등은 사실상 이 법의 법률적인 효력을 유명무실케 한 것입니다.</p> <p>3. 이에 청원인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이상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입법개정코자 이 청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인의 입법개정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이상의 의견을 첨부합니다.</p>	

소개의원:

인

# 청원서

청원제목 :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조문대비표

1997년 5월 29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개정청원

## 1. 개정취지

우리 사회에서는 한보사태와 김현철 비자금 사건등에서도 확인되다시피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수취하는 정치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에선 볼 수 없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정치권에 음성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온당치 못한 정치문화와 관행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치문화와 관행이 존속되는 한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21세기 선진적인 정치개혁은 참으로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94년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몇가지 법률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 2조에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아 사실상 이 조항의 법률적인 효력을 유명무실케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 11조 역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정당'으로 한정하여 정치인 개별에는 사실상 무한정의 정치자금이 무차별하게 유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이상과 같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입법개정코자 청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입법개정청원의 주요내용은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벌칙조항 신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등을 요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법외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강화  
(제 2조의 1항 개정, 제 30조 7호의 신설)

나.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도 선관위에 기탁  
(제 11조의 1항 개정)

다. 법인의 후원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 금지  
(제 5조의 4 개정, 제 6조의 1항 개정, 제 11조의 2항 개정, 제 12조의 개정)

라. 지정기탁제의 폐지  
(제 15조의 2항 삭제)

마. 당비 및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폐지  
(제 4조 개정, 제 6조 2의 3,4항 폐지)

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허용  
(제 12조의 개정)

사.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득표비율로 개정  
(제 18조 개정)

아. 국고보조금 용도의 비율 지정  
(제 19조 4항)

자. 후원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금품모집 금지  
(제 6조의 1항 개정)

차. 모든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강화  
(제 22조의 1항, 제 24조의 4항 개정)

카.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  
(22조의 2신설)

### 3. 개정안 전문

제2조 [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당비, 각종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회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법과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 [당비]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후원회]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제6조의2 [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있는 금품은 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1천만원으로 한다.

③ 폐지

④ 폐지

제7조 [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①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②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 ①개인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12조 [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1. 외국인·외국의 단체 및 법인

2.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종교단체

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②삭제

제18조 [보조금의 배분]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해당시기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 ④국고보조금은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로 각각 3: 4: 3으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의 1. 당비, 기탁금,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납입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기부금액 기타 명세

제22조의 2 [정치자금의 입출금] 당비, 후원회비, 국고보조금등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보고] ④정당과 후원회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벌칙] 7. 제 2조1항을 위반한 자

## 條文對比表

現 行 法	改 正 案
<p><b>제2조 [기본원칙]</b>                      ①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b>제2조 [기본원칙]</b>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당비, 각종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회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법과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b>제4조 [당비]</b>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p>	<p><b>제4조 [당비]</b>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p>
<p><b>제 5조 [후원회]</b>                      ④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중앙당 후원회는 2천인을, 시·도 지부후원회는 500인을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5조 [후원회]</b>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p>
<p><b>제 6조 [후원회의 기능]</b>                      ①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회원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p>	<p><b>제6조 [후원회의 기능]</b>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p>
<p><b>제 6조의 2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 등]</b>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 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의 경우 2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원(법인의 경우 3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b>제6조의2 [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b>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現 行 法	改 正 案
<p>제 6조의 2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 등]</p> <p>②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개인은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 1천만원 이고, 법인은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2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3천만원을 합한 2억 3천만원으로 한다.</p> <p>③후원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제6조의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백만원 이내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p> <p>④후원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p> <p>제 7조 [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 영수증]</p> <p>①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6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규격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한다)을 사용하여 후원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다.</p>	<p>제 6조의 2 [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p> <p>②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1천만원으로 한다.</p> <p>③ 폐지</p> <p>④ 폐지</p> <p>제7조 [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 영수증]</p> <p>①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p> <p>②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p>

現 行 法	改 正 案
<p><b>제 11조 [정치자금의 기탁]</b></p> <p>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는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입하는 경우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금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가액</li> <li>2.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 사업년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2중 다액</li> </ol>	<p><b>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b></p> <p>①개인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p>
<p><b>제 12조 [기부의 제한]</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li> <li>2.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li> <li>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li> <li>4.언론기관 및 언론단체</li> <li>5.노동단체</li> <li>6.학교법인</li> <li>7.종교단체</li> <li>8.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li> </ol>	<p><b>제12조 [기부의 제한]</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외국의 단체 및 법인</li> <li>2. 법인</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li> <li>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li> <li>5. 종교단체</li> </ol>

現 行 法	改 正 案
<p><b>제 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b></p> <p>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금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p>	<p><b>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b></p> <p>②삭제</p>
<p><b>제 18조 [보조금의 배분]</b></p> <p>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1항 본지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p> <p>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 ..</p> <p>③ - ⑥</p>	<p><b>제18조 [보조금의 배분]</b></p> <p>①~⑥ 삭제</p> <p>(신설)국고보조금의 배분은 해당시기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p>
<p><b>제 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b></p>	<p><b>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신설) ④국고보조금은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로 각각 3: 4: 3으로 배분하여 사용한다.</p>
<p><b>제 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b></p> <p>①의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전수 및 당비 납입자의 성명, 주소, 기타명세</p>	<p><b>제 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b></p> <p>①의 1. 당비, 기탁금,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전수 및 납입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기부금액 기타 명세</p>

現 行 法	改 正 案
<p>제 24조 [회계보고]</p> <p>④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감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30조 [벌칙]</p> <p>3.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 ..</p> <p>4.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 ..</p> <p>5. 제 12조 또는 제 13조의 ... ..</p> <p>6. 제 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p>	<p>(신설)제22조의 2 [정치자금의 입출금]</p> <p>당비, 후원회비, 국고보조금등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한다.</p> <p>제24조 [회계보고]</p> <p>④정당과 후원회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0조 [벌칙]</p> <p>7. 제 2조1항을 위반한 자제 3조(적용범위)</p>